

#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17.10.31)

## 하나UBS 행복knowhow 글로벌주식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 AX462]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하나UBS 행복knowhow 글로벌주식증권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li> <li>·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p>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업자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02-3771-7800)			
모집(판매) 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1좌단위 모집)	
효력발생일	2017년 12월 01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종류(Class)	C-P	C-PE	C-F	
가입자격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나,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인 경우	
판매수수료(선취)	해당사항 없음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보수 (연, %)	판매	0.90%	0.45%	0.03%
	운용	0.30%	0.30%	0.30%
	신탁업자	0.03%	0.03%	0.03%
	일반사무	0.02%	0.02%	0.02%
	기타	0.08%	0.07%	0.05%
	총보수비용	1.33%	0.87%	0.43%
합성총보수비용	1.33%	0.87%	0.43%	

(피투자펀드 보수 포함)			
※ 주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 C-P2, CG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판매, 운용,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보수는 3개월 후급, 기타보수는 사유발생시 지급합니다.</li> <li>· 수익자는 증권 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 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li> <li>·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매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5시 30분</b> 이전 : 제3영업일</li> <li>· <b>15시 30분</b> 경과 후 : 제4영업일</li> </ul>	환매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15시 30분</b> 이전 : 제5영업일 기준가 제9영업일 지급</li> <li>· <b>15시 30분</b> 경과 후 : 제6영업일 기준가 제10영업일 지급</li> </ul>
기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li> <li>·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li> </ul>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전략

#### 1. 투자목적

(1)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	투자목적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외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0% 이상
유동성 자산	10% 이하

####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집합투자증권	60% 이상
주식	40% 이하

(3) 비교지수(Benchmark) :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므로 비교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모투자신탁 명칭	투자 비율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90%이상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다양한 자산 및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시장 상황에 따라 원자재, 리츠 등 대안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가능)



- 하나금융투자의 자문을 참고로 하여 지역별/자산별 자산 배분 및 리밸런싱
  - 주요 투자대상 : 집합투자증권 60%이상
  - 글로벌 분산투자: 국내주식형 및 해외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전략을 실행하여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한편, 분산투자 및 인플레이션 헤지 등의 목적으로 상품(Commodity) 및 부동산(REIT) 관련 집합투자증권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배분: 각 시장의 상황 및 전망에 따라 지역 및 자산별 비중을 조절합니다.
  - 자산운용방침: 이 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는 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것을 기본 운용방침으로 하되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자산별 투자비중을 조절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그 투자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운용방침은 국제경제상황,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중에서도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등 특정지수를 추종하는 수동적인(Passive)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나, 시장상황 및 포트폴리오 구성 상 필요 등을 고려한 투자판단에 따라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외의 집합투자증권 등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위험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이장호	1961	전무	8개	1,176억	- 서울대학교 경영 / 고대 MBA - 대우증권 국제영업본부 뉴욕지사 - 우리자산운용, KDB 자산운용 주식운용/투자전략 팀장 - 우정사업본부 자금운용지원팀장, - 새마을금고연합회 글로벌투자팀장 - 한국투자공사(KIC) 투자전략팀장 - 현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 글로벌운용본부장
김준래	1975	팀장	10개	3,837억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스탠포드 대학원 경영공학과/석유공학과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 주식조사역 2년 -씨티그룹(홍콩) 구조화상품본부 2.5년

					-우리투자증권 랩운용팀 장내선물/옵션운용 1.8년 -(현)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글로벌운용본부
--	--	--	--	--	---

- 1)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기준일 현재 등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6/11/21~ 2017/11/20	2015/11/21~ 2016/11/20	2014/11/21~ 2015/11/20	2013/11/21~ 2014/11/20	2012/11/21~ 2013/11/20
행복knowhow글로벌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14-11-21	21.50	-3.18	13.61		
행복knowhow글로벌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C-P	2014-11-21	21.23	-3.25	9.13		
행복knowhow글로벌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C-PE	2014-12-05	21.77	-2.80			
행복knowhow글로벌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C-P2	2014-12-12	21.36	-3.15			
행복knowhow글로벌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Class C-F	2017-05-31					

##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 1.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b>투자원본 손실위험</b>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b>시장위험 및 개별위험</b>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국내 및 해외 주식 (관련 파생상품 포함)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 및 해외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b>신용위험</b>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투자신탁이 환헤지를 위해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을 사용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b>환율변동에 따른 위험</b>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해 해외투자분 순가치의 90% 수준에서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현지통화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 수단의 부재 및 과도한 헤지비용 등으로 인해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헤지에도 불구하고 Roll-Over, NAV 변동, 선물/선도환 시장 변화, 목표비율과 실제비율과의 차이, 환헤지 시행 수준으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b>이자율변동 위험</b>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파생상품 투자위험</b>	파생상품(선물, 옵션)의 투자는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위험등급**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4.84%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株)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판매회사의 위험분류 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이 자투자신탁에서는 기본적으로 환헛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환헛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1)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C-PE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 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2)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F, CG 수익증권 가입자**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2.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재무정보 : 요약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ubs-hana.com)